

1. 개정이유

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,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(안 제94조)

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·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4조제1항제4호 중 “직업소개”를 “직업소개(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관한 경과조치) 제9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에게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4조(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.	제94조(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<u>직업소개</u> 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	4. ----- ----- ----- <u>직업소개(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